

1. 개정이유

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은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및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바, 다만 위임조항과 인용조항이 달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함 (안 제1조,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법무부령 제 호

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조제2항”을 “제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2조제2항”을 “제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-----		

		---제2조제4항-----		

제2조(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)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		제9조(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) ① --제2조제4항-----		

1. ~ 4.(생 략)		1. ~ 4.(현행과 같음)		
② ~ ③(생 략)		② ~ ③ (현행과 같음)		